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. 9. 25 선고 2024가단276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9. 2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2020. 1. 1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손성희

별지